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초·중등교육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주호 (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가·지자체에게 다문화 교육정책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고,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실시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「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

조항 신설(안 제54조의4 신설)

나. 다문화학생 등의 교육지원을 위한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

지정·위탁 등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항 신설(안 제54조의5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초·중등교육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1. 25. ~ 3. 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의4 및 제5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4조의4(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) ①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법 제2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(이하 “다문화학생 등”이라 한다)의 연령·성별·거주지·국적 등 기본 현황
2. 지역별 다문화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현황
3. 다문화학생 등의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등 진로 현황
4. 한국어·이중언어·다문화이해교육 등 다문화교육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
5. 한국어·이중언어·다문화이해교육 등 다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
6. 다문화학생 등, 학부모, 교사, 기타 관련자 등의 다문화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

7.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며,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의

되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
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

3. 그 밖에 다문화교육에 전문성, 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기관

③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,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(관계 행정기관, 학교 및 유치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부처,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

제54조의5(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거나 다문화교육 관련 공공기관·단체 또는 법인을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다문화교육 관련 정책 연구·개발·분석·평가

2.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의 운영 및 현장 지원

3. 다문화학생 등의 학습지원 및 다문화이해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 · 활용 지원

4. 다문화학생 등의 학부모교육 및 각종 안내자료의 제작 · 보급

5. 교원 · 강사 대상 다문화교육 관련 교육자료 개발 및 연수 실시

6. 그 밖에 다문화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

② 교육감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시 · 도교육청, 교육지원청에 설치 · 운영하거나 다문화교육 관련 공공기관 · 단체 또는 법인을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한국어 · 학부모교육 등 다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

2. 다문화교육 전담교원 대상 연수 및 다문화교육을 위한 학습자료 제공

3.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문화학생 등의 위탁교육

4. 지역 내 다문화교육 유관기관과의 교류 · 협력

5. 학교 내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

6.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

7. 그 밖에 다문화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

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문화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한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각각

교육부 또는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,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54조의4(다문화교육 실태조사</u> <u>의 범위 및 방법 등) ① 법 제28</u> <u>조의2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(이</u> <u>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에는 다</u> <u>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</u> <u>한다.</u> 1. <u>법 제28조의2제1항제1호 및</u> <u>제2호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</u> <u>(이하 “다문화학생 등”이라 한</u> <u>다)의 연령·성별·거주지·국적</u> <u>등 기본 현황</u> 2. <u>지역별 다문화교육 관련 기</u> <u>관 및 단체 등 현황</u> 3. <u>다문화학생 등의 상급학교</u> <u>진학 및 취업 등 진로 현황</u> 4. <u>한국어·이중언어·다문화이해</u> <u>교육 등 다문화교육 인력 및</u> <u>시설 등에 관한 사항</u> 5. <u>한국어·이중언어·다문화이해</u> <u>교육 등 다문화교육 관련 프</u> <u>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</u> 6. <u>다문화학생 등, 학부모, 교사,</u> <u>기타 관련자 등의 다문화교육</u> <u>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</u>

사항

7.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실태
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사항

②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매
년 실시하며, 다음 각 호의 기관
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
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
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
기관
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
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
교육대학

3. 그 밖에 다문화교육에 전문
성, 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다
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법
인이나 기관

③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의 실
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
부처,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(관
계 행정기관, 학교 및 유치원을
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에게
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
다. 이 경우 관계부처, 지방자치
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

<신 설>

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

제54조의5(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거나 다문화교육 관련 공공기관·단체 또는 법인을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다문화교육 관련 정책 연구·

개발·분석·평가

2.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의 운영 및 현장 지원

3. 다문화학생 등의 학습지원 및 다문화이해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·활용 지원

4. 다문화학생 등의 학부모교육

및 각종 안내자료의 제작·보급

5. 교원·강사 대상 다문화교육
관련 교육자료 개발 및 연수
실시

6. 그 밖에 다문화교육을 위하
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
항

② 교육감은 법 제28조의2제5항
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
담당하는 지역다문화교육지원
센터를 시·도교육청, 교육지원
청에 설치·운영하거나 다문화교
육 관련 공공기관·단체 또는 법
인을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
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
있다. 이 경우 교육감은 지역다
문화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
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
수 있다.

1. 한국어·학부모교육 등 다문
화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

2. 다문화교육 전담교원 대상
연수 및 다문화교육을 위한
학습자료 제공

3.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교

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
는 다문화학생 등의 위탁교육

4. 지역 내 다문화교육 유관기
관과의 교류·협력

5. 학교 내 다문화교육 프로그
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
정적 지원

6.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 운
영

7. 그 밖에 다문화교육을 위하
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

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
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
탁하는 경우 다문화교육지원센
터로 지정한 기관과 위탁업무의
내용을 각각 교육부 또는 해당
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
시해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
정한 사항 외에 중앙다문화교육
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
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
고,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
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
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534